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5 · 18민주화운동 공헌 · 기여자를 5 · 18민주유공자에 추가〉

■ 박찬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71호)

■ 민병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42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정 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5·18민주화운동공헌·기여자를 5·18민주유공자에 추가	4
※ 참고자료	18

I. 제안경위

【박찬대 의원안】

1. 제안자 : 박찬대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5. 12. 11.
3. 회부일 : 2025. 12. 12.

【민병덕 의원안】

1. 제안자 : 민병덕의원 등 12인
2. 제안일 : 2026. 1. 19.
3. 회부일 : 2026. 1. 2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박찬대 의원안】

현행법에서는 이 법 적용 대상인 5·18민주화유공자로서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국립5·18민주묘지 안장 대상자 요건에도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헨틀리의 경우 본인들이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위르겐 힌츠페터의 경우에는 5·18기념재단에 의하여 추모비 건립 및 추모공원까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4조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민병덕 의원안】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등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사람을 “5·18민주유공자”로 명시하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교육·취업·의료 등을 지원하도록 규

정함.

그런데 5·18민주화운동 당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은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현행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 포함하여 그에 따라 예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5·18민주화운동 당시 이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을 민주유공자에 포함시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타당한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4호 신설 등).

Ⅲ. 검토의견: 5·18민주화운동공헌·기여자를 5·18민주유공자에 추가

- 2건의 개정안¹⁾은 5·18민주화운동에 공헌 또는 기여한 사람을 5·18민주유공자에 포함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18민주유공자에 “5·18민주화운동공헌자” 또는 “5·18민주화운동특별공로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박찬대 의원안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2. (생략) <u><신설></u>	제4조(적용 대상자)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5·18민주화운동공헌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공헌이 인정되는 사람</u>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1)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171호),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16142호)

민병덕 의원안	
현행	개정안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 3. (생략) <u><신설></u>	제4조(적용 대상자)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5·18민주화운동특별공로자:</u> <u>5·18민주화운동 당시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의결된 사람</u>
제57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2. (생략) 3.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의 회원: <u>제4조제3호에</u> 해당하는 사람	제57조(회원) ----- ----- -----. 1.·2. (현행과 같음) 3. ----- -----<u>제4조제3호 및 제4호에</u>----- -----

□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 대상자를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하면서, 5·18민주유공자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①사망(상이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 포함)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5·18보상법”이라 함)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②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보상법에 따른 장해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5·18민주화운동부상자), ③ 5·18보상법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으로 그 유형과 요건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음.²⁾

○ 따라서, 현행 법체계하에서 5·18민주유공자에 해당하여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5·18보상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함)에서 ^{a)}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고, ^{b)}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받았을 것을 충족하여야 함.³⁾

2)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 3)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표 1] 현행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대상 및 요건

구분	5·18민주유공자 등록 요건		
	관련자	신체적 희생 여부	보상 여부
①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제4조제1호)	④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⁴⁾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 후유증으로 사망	⑤ 5·18보상법 제5조5)에 따른 보상금 수급
②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제4조제2호)		상이 + 장애등급 판정	
③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제4조제3호)		연행·구금 ·수형(공소기각, 면소, 유죄판결)	⑥ 5·18보상법 제22조6)에 따른 지원금 수급

자료: 국가보훈부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결정
2. 관련 상이자의 장애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4) 5·18보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관련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 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
- 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 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 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5) 5·18보상법 제5조(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의 유족: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月實收入額)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單割引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2.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가. 필요한 요양으로 인하여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의 수입에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양기간의 손실액
 - 나. 상이를 입은 사람이 신체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애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상이를 입은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여,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노동력 상실을 및 장래의 취업가

○ 이에 따라, 5·18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 4,624명이 등록되어 있음.

[표 2] 5·18민주유공자 등록 인원 현황

(2025년 11월 기준, 단위: 명,)

구분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족	본인	유족	본인	유족
인원	159	2,094	709	1,407	255

자료: 국가보훈부

□ 이에 대하여, 5·18민주화운동을 국내·외에 알리는데 현저한 기여가 있는 등 5·18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사람도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였으므로 5·18민주유공자로서 합당한 예우를 받을 필요가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이 5·18민주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⁷⁾

□ 이에, 각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에 현저하게 기여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공헌자” 또는 “5·18민주화운동특별공로자” 유형을 5·18민주유공자에 추가하려는 것임.

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따른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뺀 금액

②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이 그 상이 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가 살아 있는 것으로 보아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한다.

6) 5·18보상법 제22조(기타지원금)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7) 각 개정안 제안이유, 제22대국회 2025년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2025.10.28.) 임시회의록 p.101-102.

- 다만, 신설되는 5·18민주유공자 유형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박찬대 의원안은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을, 민병덕 의원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 개정안은 그 등록 요건 및 심사 주체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표 3] 각 개정안 비교

구분	박찬대 의원안	민병덕 의원안
명칭	5·18민주화운동공헌자	5·18민주화운동특별공로자
내용	5·18민주화운동에 공헌	5·18민주화운동 당시 5·18민주화운동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에 현저하게 기여
요건 (심사주체)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	국무회의 의결

자료: 국가보훈부

- 각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의 의의, 다른 보훈관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공자 체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5·18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사람에 대하여도 국가가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한 자뿐만 아니라 공헌한 자에 대하여도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예우의 기본 이념에서 5·18민주화운동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보훈관계 법령에서는 신체적 희생(사망 또는 상이) 여부와 무관히 국가에 대한 공로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유공자로 인정하여 보훈의 영역에서 예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4] 타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공로자’ 유형

구 분	적용대상	인정요건
국가 유공자법	무공·보국 수훈자	- 무공·보국훈장을 받은 자 (포장 수훈자 미해당) - 전시·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무)공을 세운 자
	4·19혁명 공로자	- 1960.4.19.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건국포장을 받은 자 - 4·19혁명을 주도한 공로자(주도적 역할, 혁명 지휘 등)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 - 건국에 공로, 국권의 신장 등 국가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로자
참전 유공자법	참전유공자	- 6·25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자
특수임무 유공자법	특수임무 공로자	- 특임자보상법(국방부 소관)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 특수임무수행을 하였거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

자료: 국가보훈부

- 다만, 개정안은 5·18민주유공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현행 법체계상 5·18민주유공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5·18 보상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해당하는 심의·결정이 선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현행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등록체계, 법 제정 당시 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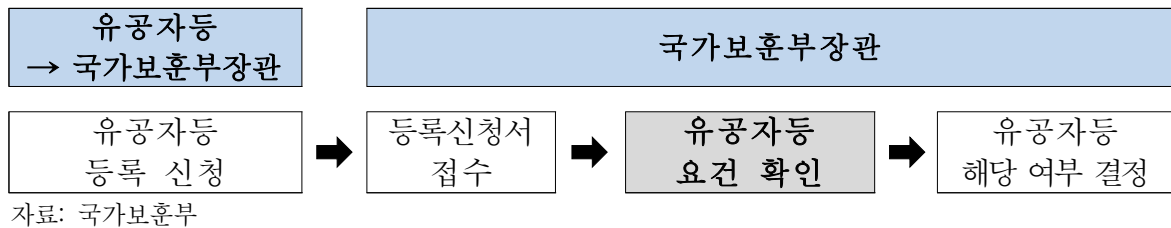
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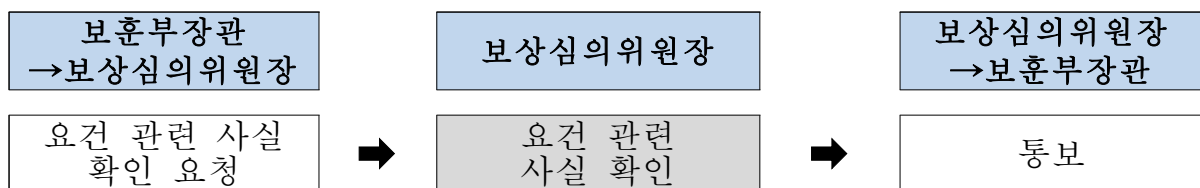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은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 신청을 하면, 국가보훈부부장관은 신청자가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 5·18유공자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여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확인의 방법으로 국가보훈부장관이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면,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음.⁹⁾

[표 5] 5·18민주유공자 등록 및 결정 절차



[표 6] 5·18민주유공자 요건 확인 절차



- 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전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는, 동 법이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사항을 5·18유공자 등록에 관한 요건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동 법은 제정 당시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 또는 지원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한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이 일시적 보상에 한정하고 있어 그 예우가 미흡하므로 국가유공자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정하였기 때문에,¹⁰⁾ 동 법의 등록 체계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7] 5·18민주유공자 등록 요건 및 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사항

구분	등록 요건	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정 사항 ¹¹⁾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제4조제1호)	㉠ 5·18 민주화운 동 관련자	㉡ 사망 또는 행방불명 으로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 수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제4조제2호)		㉢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제4조제3호)		㉤ 5·18보상법 제22조에 따른 지원 수급

10) 제16대국회 제21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2001.2.19.) 회의록 p.8.-9. 및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60475호) 검토보고서’(정무위원회, 2001. 2.) 참조.

11) 5·18보상법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에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결정

2.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

3. 관련자 또는 그 유족의 보상금 등의 심의·결정 및 지급

4. 보상지원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의 준비 및 보상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의 처리

5.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그 밖의 지원

12) 5·18보상법 제5조(보상금) ①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보상 결정 시까지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1. 2. (생략)

○ 박찬대 의원안은 이러한 현행법의 5·18민주유공자 등록체계 등을 반영하여,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공헌자로 인정받을 것을 5·18민주화운동공헌자 등록요건으로 정한 것으로,

개정안과 같이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사·결정한 사항을 5·18민주화유공자 등록 요건으로 하기 위해서는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심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5·18보상법(행정안전부 소관) 개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⁴⁾

○ 민병덕 의원안은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 없이 국무회의 의결로 5·18민주유공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현행 5·18민주유공자 등록체계와 달리,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해당 여부’에 대한 결정 없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이 법이 5·18보상법 적용 대상자 중 그 희생과 공헌을 고려하여 국가적 예우가 필요한 사람을 5·18민주유공자로 등록하여 지원

13) 5·18보상법 제22조(기타지원금)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재원과 지급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 제14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14) 관련하여,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공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5·18보상법 개정안(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5170호)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25.12.12.)되어 있음.

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는 5·18보상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5·18민주화운동 공헌 내용을 심사·결정하는 것은 5·18보상법 입법목적과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목적에 벗어난 것이라는 입장임.

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 밖에, 박찬대 의원안의 제안이유에 따르면, 개정안은 위르겐 힌츠페터, 찰스 헨틀리 등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을 5·18민주유공자로서 예우하고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을 유공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을 수용하려는 경우에는 체계적 정합성을 위하여 관련 법령들이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권리가 소멸한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자에서 배제하고 있고,¹⁵⁾ 이는 다른 보훈관계 법률에서도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¹⁶⁾ 개정안이 그 입법취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함께 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그에 앞서 대한민국 국적자만을 법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훈관계 법률체계와 달리

1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②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이 경우 5·18민주유공자 본인이 제8조제1항제2호 또는 제95조제1항에 해당하면 그 가족이 예우를 받을 권리도 함께 소멸된다.

제8조(신상 변동의 신고 등)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대상자는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호 등.

현행법에 한하여 외국인을 적용대상으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5·18민주묘지의 안장 대상자를 “5·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¹⁷⁾ 개정안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공헌자”가 국립5·18민주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동 조항을 함께 개정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훈부는 각 개정안에 대하여,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사람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로서 국가적 예우를 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박찬대 의원안의 경우, 5·18보상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5·18보상법 개정이 우선될 필요가 있고, 국가보훈관계 법률은 보훈 대상을 대한민국 국적자에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방안에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민병덕 의원안의 경우, 민주주의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1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립5·18민주묘지: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사람

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¹⁸⁾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입법 실익이 낮고, 5·18민주유공자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중 희생·공헌이 커 국가적 예우가 필요한 대상을 5·18민주유공자로서 예우하고 있으므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지 않은 사람을 유공자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하여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또한, 각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공헌자(또는 특별공로자) 유형을 신설하여 5·18민주유공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므로, 5·18민주유공자 범위 확대는, 5·18보상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이지만 이 법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에는 제외되어 있는 해직자, 학사징계자 등도 5·18민주유공자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1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또는 특별공로자를 추천하는 경우 추천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건국과 그 기틀을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2. 국권(國權)의 신장과 우방(友邦)과의 친선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3. 국가의 민주발전과 사회정의의 구현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4. 그 밖의 사유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표 8] 5·18보상법에 따른 관련자의 5·18민주유공자 등록 가능 여부

5·18보상법		현행법
관련자	보상 또는 지원 여부	5·18민주유공자 등록 가능 여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 (보상금 대상자)
상이를 입거나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	○ (보상금 대상자)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 (보상금 대상자)
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	○ (기타지원금 대상자 ¹⁹⁾)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을 받은 사람	○	○ (기타지원금 대상자)
수배된 사람,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	×
해직된 사람	×*	×

* ‘단순 수배자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은 5·18보상법에 따르더라도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고, ‘해직된 사람’은 생활 보조를 위한 지원금²⁰⁾을 지급받을 수 있음.

자료: 국가보훈부

문 의 처
02)6788-5112

19) **5·18보상법 시행령 제21조(기타지원금의 지급등)** 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생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함은 5·18민주화운동에 적극참가한 사실이 원인이 되어 생업등에 종사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20) **5·18보상법 제7조(생활지원금)**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5·18보상법 시행령 제14조(생활지원금)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은 보상지원 위원회에서 정한다.

* 5·18보상법 제7조에 따른 생활지원금 대상자는 보상지원위원회가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운영되며,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직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준하여 지급됨.

참고 1

5.18민주유공자 보훈대상 편입경위 및 등록 절차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 시작 (1990년, 행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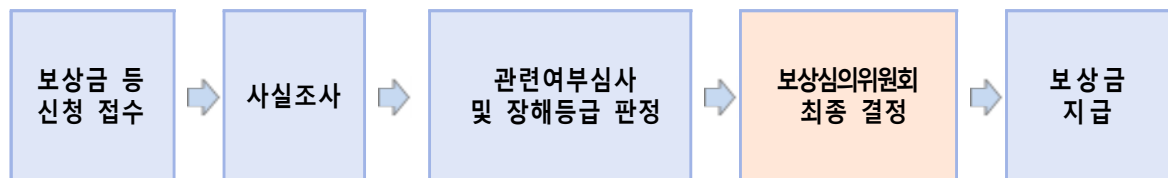
- 1988.11.26. 노태우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및 특별법 제정을 선포
- 1990.8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등에 관한 법률」 제정
(現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행안부 소관)
 - 내용 : 5.18 관련 사망, 행방불명, 부상자 또는 유족 등에 대해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 일시보상 실시

□ 5·18민주유공자 보훈대상으로 편입 (2002년, 보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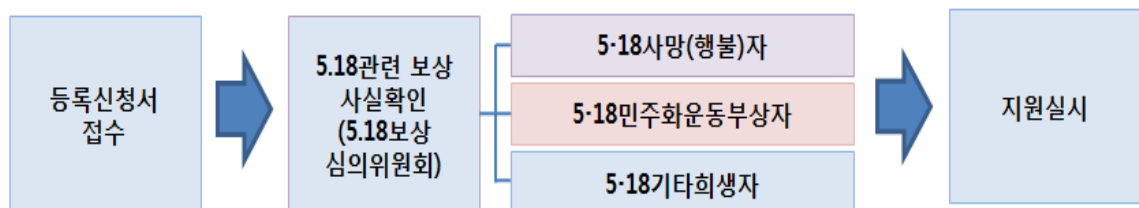
- 1997년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는 5·18 관련자의 국가유공자 예우를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시
- 2002.1월 「광주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現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부 소관)
 - 내용 : 5.18보상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을 5·18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교육·취업·의료 등 지원

□ 5·18민주유공자 보상·등록 절차

■ (광주광역시) 5·18보상심의 절차



■ (국가보훈부) 5·18유공자 등록 절차



참고 2

5·18민주유공자 보훈 수혜사항

구 분	세 부 수 혜 내 용
증서	○ 대통령 명의 5·18민주유공자증서 수여
수당 지원	○ 생계지원금 : 80세 이상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한함
교육 지원	○ 수업료 등 면제 : 부상·희생자 본인 및 자녀,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및 자녀(중·고·대학교) ○ 학습보조비 지급 : 부상·희생자 본인·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중·고·대학교), 자녀(중·고등학교) ※ 생활수준조사 결과 가구당 소득인정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 - 희생자 본인 및 자녀 : 기준금액 대비 100% 이하 - 2016.6.23.이후 등록한 12~14등급 부상자의 자녀 : 기준금액 대비 125% 이하 ※ 2016.6.23.이후 등록한 민주유공자의 자녀는 30세 이전 교육기관에 취학(입학·재입학·편입학·전입학)한 경우에 지원
취업 지원	○ 보훈특별고용 : 본인, 배우자, 부모 및 39세 이하인 자녀 3인까지 ※ 2016.6.23.이후 등록자 : 자녀 1인에 한하며, 1인당 취업지원 횟수 3회(부모 및 장애등급 12~14등급 자녀 제외) ○ 가점취업 및 직업훈련 :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 2016.6.23.이후 등록자 : 부모 및 장애등급 12~14등급 자녀 취업지원 비대상
의료 지원	○ 보훈병원 진료 - (부상자 본인) 국비, (유·가족) 60% 감면,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0% 감면,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유·가족) 30% 감면 ※ 2016.6.23. 이후 등록 신청한 12~14급은 인정 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 부담, 유가족은 배우자 또는 선순위자 1명에게 지원(다만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때에는 부모 모두 포함) ○ 위탁병원 진료 : 부상자 본인(국비) ※ 응급 및 통원진료 가능 ※ 2016. 6. 23. 이후 등록신청 12~14급은 인정상이처 외 질환 10% 본인부담 ○ 등록 신청 시부터 결정 이전 : 보훈·위탁병원 진료비 선 납부 후 정산 (단, 위탁병원은 '21.4.1. 이후 등록신청자부터 적용) * 필요 시 보훈병원장의 승인 하에 외부 전문병원 진료 의뢰
대부 지원	○ 대상 : 5·18민주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 주택(구입,임차,개량), 아파트 분양, 사업, 농토구입, 생활안정대부 - 대부한도액은 300~8,000만원까지(연 3.0~4.0%)
주택 우선공급	○ 신규건설·공급주택 우선공급 : 분양 5%, 임대 10%(공급물량기준) ○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 : 2%(공급물량기준)
기타 지원	○ 양로지원 : 무의탁자(남자 65세, 여자 60세 이상, 단 부상자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 유공자 본인 입소 시 배우자 동시 입소 가능(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 ○ 양육지원 : 미성년자녀 및 미성년제매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보훈요양원 및 민간요양시설 이용 : 생활수준 고려 - 부상자 :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희생자 및 5·18민주유공자의 배우자 :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 지원 - 선순위 부모 :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 지원 ○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 : 지원요건 해당자 ○ 수송시설 감면 이용(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함) ○ 국립묘지 안장(배우자 합장 가능) * 단,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있는 경우 별도 심의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유공자 본인 사망시, 지원요건 해당자) ○ 영구용 태극기 지원, 묘비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국립묘지 안장자는 제외) ○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지원(유공자 본인 사망시, 지원요건 해당자) ○ 보철용 차량 지원(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한함) -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 면제, 도시철도채권매입 면제, LPG차량 세금인상분 지원,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보철용차량으로 등록된 비사업용 차량) ○ 고궁 등 무료이용/협약콘도 감면이용(소노·한화·일성·청풍·주문진·리솜·통영스탠포드) ○ 국내항공요금 50%할인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30%할인 :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유공자 선순위유족 ※ 항공사별 할인요율 다를 수 있음 ○ 전화요금 감면(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거주지 지자체에 문의) ○ 주민등록·인감증명·가족관계증명 등 제증명 발급수수료 면제 ○ 5·18운동 관련자 의료급여 신청 가능(거주지 지자체에 문의)

참고 3

5.18 8차 보상(행안부·광주시) 및 유공자 등록 현황(보훈부)

□ 제8차 5·18보상심의 개요

- 일 정 : '23.7.1~12월말까지 접수
- 신청인원 : 1,979명 신청(기존 대상의 상이등급 재분류 신청 포함)
- 그간 보상심의 경과 * 1인당 평균 43백만원 지급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신청인원	보상인원	보상액	보상비율
계	9,227	5,807	251,119	62.9%
1차 ('90)	2,693	2,219	142,171	82.4%
2차 ('93)	2,788	1,832	38,771	65.7%
3차 ('98)	837	464	27,456	55.4%
4차 ('00)	868	473	18,572	54.5%
5차 ('04)	527	109	4,827	20.7%
6차 ('06)*	1,008	426	13,639	42.3%
7차 ('15)**	506	284	5,683	56.1%

* 재분류 신체검사 신설, ** '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 발표 대상(강제구금·연행) 구제

□ 5.18유공자 등록 현황

(단위:명, '25.11월말 기준)

구 분	합 계	5·18사망·행불자	5·18부상자	5·18희생자
본 인	3,501	0	2,094	1,407
유 족	1,123	159	709	255
계	4,624	159	2,803	1,662

□ 관련 법령

「5·18유공자법」 제4조 '적용 대상자'(정의)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보상법」 제5조 제5항에 따른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 관련 「5·18보상법」에 따라 기타지원금을 받은 사람

「5·18보상법」 제2조 '5·18관련자 정의'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傷痕)를 입은 사람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사람
-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소기각·유죄판결·면소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사람

※ '학사징계자'의 경우 보상지원은 없으며 징계기록 말소 등 명예회복 조치

